조종석의 내부자 위협, 조종사 보안을 다시 묻다

– 플라이두바이 FZ1073 조종실 테러 시도와 조종사 신원검증 공백 –

발행일 2026. 10. 5. | 제2026-13호

9. 30. 두바이발 텔아비브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 극단주의 우려로 비행 배제 이력이 보도된 부기장이 비상용 도끼로 기장을 공격해 급강하했으나, 승객 · 승무원이 제압해 사우디에 비상착륙

→ 위협이 조종석 안에 있었다는 점이 핵심, 국내 조종사 보안체계 선제 점검 필요(붙임: 협회 정책제안)

사건 개요

가. (발생일시) 2026. 9. 30.(수) 두바이 → 텔아비브 FZ1073편(보잉 737 MAX 8, 승객 174명)

나. (사건경과) 부기장이 조종실 비상용 도끼로 인도 국적 기장을 공격, 조종장치 장악 시도

* 비행추적 자료 기준 30초 안팎에 약 1만 6천 피트(약 4.9km) 급강하

다. (제압 · 착륙) 중상을 입은 기장이 조종실 문 개방 → 승객 · 승무원이 진입해 부기장 제압

* 객실에 탑승 중이던 자사 비번 조종사 2명이 조종을 넘겨받아 사우디 타부크 공항에 비상착륙
* 기장이 문을 열지 못했다면 외부 진입이 어려워 항공기 이용 테러로 이어졌을 가능성

라. (당국판단) UAE 검찰총장, 10. 3. '테러 공격 시도'로 공식 규정, 동기 · 공범 · 연계 수사 중

마. (후속조치) 이스라엘 총리, 10. 4. 자국행 외국 항공편 보안조치 전면 재검토 지시

* 호주연방경찰도 합동 대테러팀이 부기장의 호주 연계를 조사 중이라고 확인

신원검증 공백의 3중 구조

가. 신원검증 관련 단계별 공백 발생

ㅇ 위험 신호는 있었으나 **정보의 확인 · 전달 · 활용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음(절차의 단절)**

단계	확인된 내용	공백
전 고용주 (오만항공)	2024년 극단주의 우려로 비행 배제, 행정직 근무 (관계자 인용 보도)	판단의 **타 항공사 · 국가 공유 여부 불명**
채용사 (플라이두바이)	채용 시 통상 보안검사 실시	**범죄전력 중심**, 급진화 확인 미흡(보도)
도착국 (이스라엘)	승무원 명단 사전 접수, 미수교국 조종사 배제 약정	**항공사 확인서에만 의존**, 자체 검증 없음

ㅇ 해당 부기장은 사건 이전에도 **이스라엘행 항공편을 여러 차례 운항**한 것으로 보도

* 이스라엘 관계기관은 최소 2021년부터 외국 항공편 보안점검 부족을 경고해 온 것으로 전해짐

나. 부기장의 5개국에 걸친 경력

- 해당 부기장의 경력은 **5개국에 걸쳐 있어** 한 나라의 조사로는 전체 경력 확인 불가

시기	국가	내용
2015~2017	호주	학생비자로 유학 → **호주 합동 대테러팀**이 연계 조사(급진화 여부 미확인)
~2025. 2.	오만	오만항공 근무, 2024년 **비행 배제 후 행정직**
2023	영국	원격과정으로 항공경영 학위 취득(조종훈련 아님)
2025	모로코	로열에어모로코 사전교육 이수 후 **불채용**(사유 비공개)
이후	UAE	플라이두바이 부기장으로 채용, 이스라엘행 노선 승무

다. 추가 확인 필요 사항 및 심각성 판단

- 벤구리온 충돌 · 미군기지 공격 계획은 이스라엘 측 주장이나, 실행됐다면 **제2의 9·11로 볼 중대 사안**
- 단독 범행 여부와 배후는 수사 중 → **동일 수법의 음모가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대응 필요

해외 유사사례

- 조종석 안의 조종사가 위협 주체가 된 사례는 이전에도 반복

사례	내용
이집트항공 990편(1999)	미 NTSB는 부기장의 조종 입력을 원인으로 판단(동기 미규명), 217명 사망
모잠비크항공 470편(2013)	기장이 부기장을 밖에 두고 문을 잠근 뒤 추락, 33명 사망
에티오피아항공 702편(2014)	부기장이 기장을 밖에 두고 문을 잠근 뒤 망명 목적으로 제네바행
저먼윙스 9525편(2015)	부기장이 기장 퇴실 후 문을 잠그고 고의 추락, 150명 사망

- 그간 조종사발 위협 논의는 **정신건강 · 개인 동기 중심**, 극단주의 동기의 조종석 테러 실행은 이례적
  * 저먼윙스 이후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이 의료적 적합성 관리 문제를 지적, 정신건강 관리 강화의 계기
- 9·11 실행범은 비행학교 훈련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정식 승무원으로 조종석에 앉아** 있었음

국내 조종사 신원조사 제도 현황

가. 공항 보호구역 출입자 신원조사

- 「항공보안법」 제13조 : 보호구역에서 **상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허가**를 받아 출입
- 같은 법 시행규칙 : 출입허가 및 **갱신 시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의뢰
  * 갱신 시 조사는 2012년 ICAO 평가 권고로 도입. 신원조사 원권한은 국정원장, 일부는 경찰청장 등에 위탁

나. 관련 제도

- 운항승무원 **항공신체검사증명**(「항공안전법」 제40조), 2015년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지침** 도입
- 항공보안 **자율신고와 신고자 보호**(「항공보안법」 제33조의2) 운영

다. 현행 제도의 한계

- 제도는 있으나 **조종간을 쥐는 직무의 보안적격성**을 겨냥해 연결돼 있는지 점검 필요

구분	현행	한계
조사 목적	보호구역 출입허가 요건	조종사 **직무 보안적격성 심사 아님**
조사 범위	국내 기록 중심	**해외 교육 · 근무 이력, 외국 당국 판단** 확인 곤란
조사 시점	출입증 발급 · 갱신 시	갱신 사이 **신규 위험정보 반영 장치** 불명
의학 관리	신체검사 · 정신건강 지침	정신건강 중심, **극단주의 행동징후는 별도 영역**
외항사	운항국 · 항공사 검증에 의존	국내 확인 절차 **공개자료로 확인 안 됨**

- 조종사별 적용 경로, 재조사 주기, 해외 경력 확인 방식에 대해 **일제 실태 점검 필요**
  * ICAO 부속서 17은 보호구역 무호위 출입자에 대해 채용 전 조사와 정기 재조사를 요구

평가 및 진단

가. 조종석 내부자 위협의 일반 경로

- 조종석에 대한 **내부자(조종사) 접근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가능

경로	내용	기존 검증의 빈틈
조직 파견형	기록 없는 조직원을 훈련시켜 취업	깨끗한 신원 → 채용 조사로 못 거름
자생 급진화형	정상 채용 후 스스로 급진화	채용 시 확인 이후 재점검 공백
포섭형	현직 조종사를 외부 조직이 포섭	행동 변화 감지 · 보고 연계 미흡

  * 협회장은 국정원 재직 당시 9·11 직후 조종사 위장취업 가능성을 제기하고 신원검증 · 사후관리를 강조한 바 있으며, 그 경고가 25년 만에 현실화

나. 정신건강 중심 대응의 한계

- 저먼윙스 이후 적성검사 · 심리지원 강화는 분명한 진전
- 그러나 **극단주의 행동징후, 보안 관련 이력, 해외 기관의 위해정보**를 확인 · 공유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

다. 해외정보 결합의 필요성

- 국내 범죄경력 조회만으로는 **해외 교육 · 근무 이력, 외국 당국의 보안상 우려, 테러조직 연계** 확인 곤란
- 조종사는 국적을 넘나드는 이직이 잦아 **한 나라 · 한 회사의 조사로는 한계** → 이번 5개국 경력이 실례

라. 강화된 조종실 문의 역설

- 9·11 이후 강화된 조종실 문은 **안의 공격자가 비상진입을 거부하면 외부 진입이 어려운 구조**
- 화재 대응용 비상장비(도끼)가 그대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됨**

항공보안 측면의 시사점

가. 채용 단계 심층 신원검증

- 보호구역 출입증 조사와 별도로 **조종사 채용 · 배치 단계의 보안적격성 확인** 절차 마련

- 국적과 무관하게 **해외 이력이 있는 조종사**는 전 고용주 · 감독기관 확인 보강(EU는 최근 5년 이력 확인)

나. 재직 중 상시 모니터링

- **정기 재조사와 사건기반 수시심사**를 함께 운영
- 사상 감시가 아니라 **테러정보 등재 · 외국 당국 비행금지 · 경력 위조 · 중대 보안위반 시 재심사**하는 지속검증

다. 항공사 · 국가 간 위험정보 공유

- 원자료나 소문이 아닌 **비행금지 · 자격정지 여부, 판단기관, 유효기간, 재심사 상태**만 확인하는 공식 채널 마련

  → ICAO 의제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우선 국내 항공사 간 확인 체계부터 시행

라. 급진화 조기경보

- 동료 조종사 · 승무원의 **객관적 행동 변화 신고**를 항공보안 자율신고와 연계
- **종교 · 국적 · 상담 이력 자체는 위험지표가 아님**. 폭력 · 위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객관적 정보만 평가
- 신고 체계와 함께 **조종사 상담 · 치료 지원도 강화**해 정상적인 도움 요청이 위축되지 않도록 설계

마. 외항사 조종사 검증 경로 점검

- 이스라엘도 외국 조종사는 항공사 확인서에 의존 → 국내 취항 외항사 조종사의 **확인 경로 정부 차원 점검**

  → 고위험 노선 · 운항국은 운항국 당국과의 확인 협력 강화

바. 긴급 위협평가

- 개인 일탈로 조기 결론 내리지 말고 **관계기관 합동 위협평가** 지속

사. 조종실 비상대응 보완

- 조종 · 객실승무원 공동으로 **조종실 내부 폭력, 비번 조종사 투입 상황** 훈련
- 비상장비 보관 방식은 **제작사 · 감항당국 검토**를 거쳐 개선 여부 판단

결론

- 국내 적용의 선결 조건은 **보안적격성의 법적 근거, 기관 간 역할 분담, 정정 · 소명 · 재심 절차** 마련
- 조종사 보안적격성은 채용 시점의 1회 확인이 아니라 **근무 기간 전체를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협회는 수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조종사 보안적격성 관리 모델」 연구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
  * 관계기관 연구용역 추진 시 협회 전문인력 참여 가능
  * 개별 사건의 최종 수사 결론과 무관하게, 조종사 보안체계의 선제 점검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음

※ 참고자료

- Flydubai co-pilot attacked pilot with axe in attempted terrorist attack, UAE says (Reuters, 2026. 10. 3.)
- How was Flydubai co-pilot cleared despite being deemed a security risk? (Al Jazeera, 2026. 10. 4.)
- Flydubai hijacker planned to crash plane into Ben Gurion Airport, Israeli officials say (Ynetnews, 2026. 10. 4.)
- AFP confirms investigation of flydubai co-pilot's Australian links (ABC News Australia, 2026. 10. 4.)
- “추락시키려 기장 도끼 공격”… 이스라엘 “하늘 뚫려” 비판 직면 (서울신문, 2026. 10. 4.)
-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붙임

조종사 보안체계 점검 방향(협회 제안)

1. 기관별 역할 분담(안)

- 특정 기관의 독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총괄하는 합동체계**로 설계

기관	권고 역할
국토교통부	보안적격성 **법적 기준 마련**, 자격 · 운항증명 · 보안계획 감독, 합동 실태점검 총괄
국가정보원	해외 이력 · 외국 기관 경보 · 테러 연계정보를 융합해 **보안위험 의견 제시**
경찰	국내 범죄경력 · 수사정보, 폭력 · 위해행동 자료 확인
항공사	채용 · 경력 검증, 해외 전 직장 조회, 행동변화 · 위반 보고와 후속조치
공항운영자	보호구역 출입증 심사 · 갱신 · 회수와 접근권한 관리

- 국정원은 의견을 제시하고, **자격 · 운항 · 고용 결정은 국토부와 항공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수행

2. 단계별 점검 항목

단계	점검 항목
채용	신원 · 면허 진위, 해외 거주 · 교육 · 고용 이력, 전 고용주의 비행정지 · 제한 사유
최초 운항 전	신원조사 결과 · 채용 심사 · 운항 배정 대조, 미확인 중대 사안의 운항 유보 기준
재직 중	정기 재조사, 위험정보 발생 시 수시심사, 행동변화 신고 처리
퇴직 · 이직	확정된 조치와 해제 여부를 공식 채널로 확인 · 회신

3. 해외 경력 확인 원칙

- 확정된 비행정지 · 자격제한과 **미확정 의혹을 구분**해 판단
- 해외 기관 무응답은 **부적격 판정과 다름** → 보완 제출 · 다른 경로 확인 · 독립 심의

4. 인권보호와 불복절차

- 종교 · 국적 · 정치적 견해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위해정보만 평가**
- 범죄 · 수사경력과 민감정보의 조회 · 공유는 **적법한 근거 아래 필요한 범위로 제한**
- 당사자의 **열람 · 정정 · 소명 · 재심** 절차 보장, 오정보 삭제 기준 마련

5. 정부 합동점검 질문

o 실태점검 시 관계기관 · 항공사가 공통으로 답해야 할 사항

항목	점검 질문
적용 대상	국적사 내 · 외국인 조종사, 외항사 조종사별 검증 · 출입 경로는 무엇인가
해외 이력	해외 경력과 전 고용주의 비행정지 사유를 어떤 공식 창구로 확인하는가
재직 중 재심사	갱신 사이 중대 위험정보 발생 시 누가 재심사를 개시하는가
결과 연결	신원조사 · 채용 심사 · 위험정보가 운항 배정 · 접근권한 변경까지 이어지는가
권리 보장	정정 · 소명 · 재심과 신고자 보호가 실제 작동하며 누가 확인하는가

6. 단계별 추진(안)

단계	주요 과제
단기	국토부 주관 조종사 신원검증 실태점검, 외항사 조종사 확인 경로 파악, 긴급 위협평가
중기	해외 경력 확인 표준서식, 사건기반 수시심사 절차 시범 운영
장기	「항공보안법」상 보안적격성 제도화, 국가 간 공식 확인 채널 구축